



☎ 463-8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FAX : 02-566-6426

(02-1577-5500, 담당 이동욱)

CMS업무팀- 76

2015. 2. 11.

수 신 CMS 이용기관 대표자
참 조
제 목 출금이체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출금이체 등록정보 해지 요청

1. 귀 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출금이체정보 조회서비스 본격실시(붙임 참조)와 관련하여 고객민원 최소화를 위해 『CMS 이용약관』에 의거, 출금이체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출금이체 등록정보 해지를 요청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시어 고객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내용 : 출금이체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해지내역(데이터)을 결제원에 송신
- 요청 사유 : 고객이 이용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용기관에서 해지처리하지 않은 본인의 출금이체 등록정보 조회 시 관련 민원발생 가능
- 해지 방법 : 해당 고객의 해지내역을 EB130217, EB130224, EB130303 파일에 포함하여 송신

* EB13 파일생성 및 송신방법 관련 문의는 해당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

○ 요청 근거 : 『CMS 이용약관』 제5조 제10항

○ 기타 사항

— 상단의 해지 방법에 의거하여 해지내역을 송신하는 경우 참가은행에서 해당 고객 앞 출금이체등록이 해지되었다는 문자메시지(LMS)

발송을 제외할 예정


* EB130217, EB130224, EB130303 이외의 파일에 해지내역을 포함하는 경우 고객 앞 문자메시지가 발송

- 이용기관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해지하지 않아 결제원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CMS 이용약관』 제13조에 의거 CMS 이용승인 중지 또는 해지

붙임 : 1. CMS 이용약관 발취 1부.

2. 출금이체정보 조회서비스 설명자료 1부. 끝.



금융결제원 e사업실장 

(붙임 1)

CMS 이용약관 발췌

제 5 조 (이용기관의 의무)

- ⑩ 직접접수기관은 출금이체 청구가 종료된 해지고객의 ‘해지데이터’를 반드시 결제원 앞 전송·처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이용승인 해지)

-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에 따라 CMS 이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절차에 의거 정당한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3. CMS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 ④ 이용기관이 제3항에 해당할 경우, 결제원은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이용승인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동 이용기관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동 이용기관의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⑤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용기관의 소재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등 그 기간 내에 소명 내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용기관의 CMS 이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다.

(붙임 2)

출금이체정보 조회서비스 설명자료

2015. 2.

금융결제원

1 개요

- **출금이체정보 조회서비스란** 출금이체서비스의 안전성과 대고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등록정보를 웹사이트 (www.payinfo.or.kr) 등을 통해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출금이체란?

납부자가 이용기관과의 서비스 이용계약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통신회료, 보험료, 렌탈료 등을 납부자가 동의한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출금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로서 CMS출금이체, 지로자동이체, 펌뱅킹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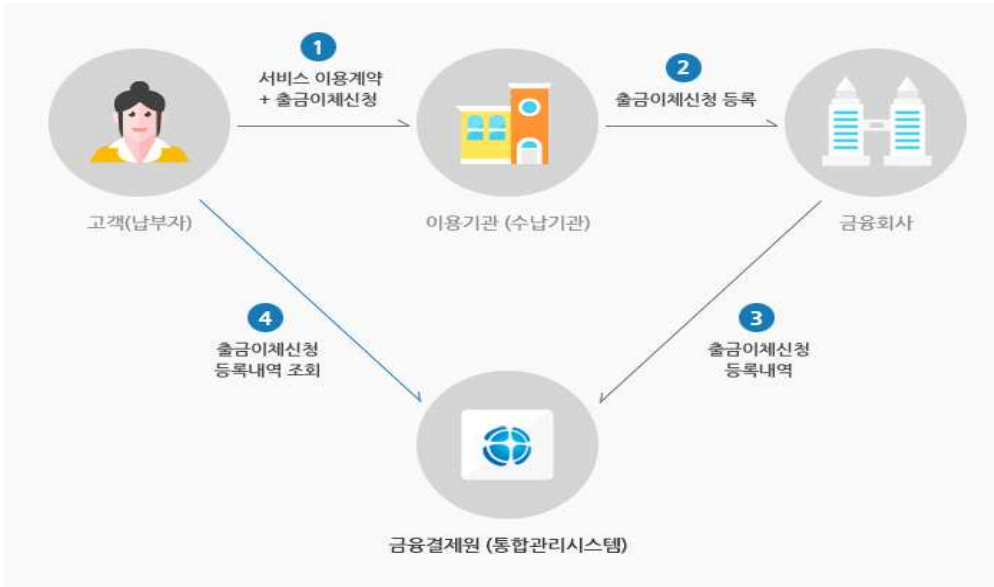
- 출금이체정보 조회서비스는 출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금융회사 공동의 서비스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2 서비스 설명

- **조회방법** : 웹사이트(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조회

- 제공서비스 : 출금이체 신청내역 조회
- 서비스제공시간 : 09:00~22:00 (매일)
- 사용자인증 : 예금주실명번호 + 공인인증서
- 조회대상 : 조회를 요청한 “실명번호”로 개설된 전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신청정보
- 조회정보 : 출금이체등록정보 (계좌번호, 성명, 납부자번호 등)
이용기관정보 (이용기관 연락처,이용기관명 등)

※ 현재는 시범실시기간으로 일부 이용기관에 등록된 출금이체등록정보만 조회가능



□ 조회화면 (예시)

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및 실명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확인)

출금이체정보조회

출금이체정보조회

서비스 이용시간
연중무휴
09:00~22:00

출금이체신청내역
해지/변경/조회 문의
> 이용기관으로 문의

사이트 이용방법 문의
(평일09:00~17:00)
> 1577-550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예금주실명번호(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정보주체 본인의 출금이체정보 조회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출금이체 신청일~출금이체 해지일로부터 5년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①항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기타 개인정보 처리관련 :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 **상기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조회

예금주 실명번호

-

* 예금주 실명번호란, 예금계좌를 개설시 입력한 실지명의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의 정보입니다.

* 예금주 실명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② 출금이체정보 목록 조회

출금이체정보조회

출금이체정보조회

서비스 이용시간
연중무휴
09:00~22:00

**출금이체신청내역
해지/변경/조회 문의**
> **이용기관으로 문의**

사이트 이용방법 문의
(평일09:00~17:00)
> **1577-5500**

고객님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등록된 출금이체 (지로자동이체, CMS, 펀뱅킹 등) 정보를 조회합니다.

[안내사항]

- 고객님의 예금계좌에 "정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정보만** 조회됩니다.
(“해지”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출금이체 등록내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으로 하셔야 합니다.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출금이체 등록내역과 관련한 상세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 내역에 관련한 문의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 고객님이 1건의 출금이체 신청을 한 경우라도 해당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서비스 관리정책에 따라 여러건의 출금이체 종류별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출 관련문의 : 이용기관**)
- 등록된 출금이체정보에 대한 **해지요청**은 “**금융기관**” 또는 “**이용기관**”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출금이체 등록내역에 관한 조회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출금이체정보 목록 (0000.00.00일 기준, 정상신청내역, 해지제외)

* 출금이체 신청 상세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선택]**에 체크 후 **[조회]**를 클릭하세요

선택	계좌정보	출금이체등록건수
<input type="checkbox"/>	신한 37102 *****	3건
<input type="checkbox"/>	농협 56552202*****	2건

전체선택
조회

③ 출금이체정보 상세조회

※ 조회되는 정보 중 “계좌번호, 납부자번호, 이용기관코드 등”의 **출금이체등록정보는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자료**가 안내되며 (금융회사로부터 출금이체등록원장 매일 수신)

이용기관 상세정보 및 연락처는 이용기관과 출금이체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제공기관(대행기관 포함)에 등록된 정보 표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이용기관원장 매일 수신)



출금이체정보조회

출금이체정보조회



서비스 이용시간
연중무휴
09:00~22:00



출금이체신청내역
해지/변경/조회 문의
> [이용기관으로 문의](#)



사이트 이용방법 문의
(평일09:00~17:00)
> [1577-5500](#)

출금이체정보 상세조회

■ 아래의 계좌에 등록된 출금이체정보 상세내역을 표시합니다.

계좌정보	출금이체등록건수
신한 37102 *****	3건

출금이체신청내역 관련 문의는 이용기관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용기관연락처 참조)

■ 출금이체정보 상세내역 (0000.00.00일 기준, 정상신청내역, 해지제외)

* 출금이체정보 상세내역에 관련정보가 없는 경우 '-'으로 표시됩니다.

순번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서비스종류	납부자번호	신청일	이용기관코드	이용기관명	이용기관 상세정보	이용기관 연락처
1	신한	37102 *****	CMS	AH012012	2013/05/01	991212	가나다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1544-1111
2	신한	37102 *****	CMS	AH012012	2013/05/01	991212	가나다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1544-1111
3	신한	37102 *****	CMS	AH012012	2013/05/01	991212	가나다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1544-1111
4	신한	37102 *****	CMS	AH012012	2013/05/01	991212	가나다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1544-1111
5	신한	37102 *****	CMS	AH012012	2013/05/01	991212	가나다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1544-1111
6	신한	37102 *****	CMS	AH012012	2013/05/01	991212	가나다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1544-1111
7	신한	37102 *****	CMS	AH012012	2013/05/01	991212	가나다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1544-1111
8	신한	37102 *****	CMS	AH012012	2013/05/01	991212	가나다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1544-1111

3

이용기관 협조요청 사항

□ 출금이체정보 원장정리 (2015.3월 이전)

- 출금이체정보 통합조회서비스가 본격 실시되면 언론홍보 등을 통해 동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등록된 출금이체신청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금이체서비스 이용기관은 **해지가 필요한 내역은 출금이체정보조회 서비스 실시 이전에 일괄정리**하시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금이체 이용기관정보 업데이트 (2015.3월 이전)

- 출금이체정보 통합조회서비스에 조회되는 이용기관의 정보 (연락처, 담당자 정보 등) 등을 CMS 홈페이지(www.cmsedi.or.kr)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민원응대 연락처나 담당자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서비스 실시 전에 아래와 같이 변경**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방법

1. 1577-5500 ⇒ 1번 ⇒ 3번 ⇒ 1번 ⇒ 0번 누른 후 상담원에게 요청
2. www.cmsedi.or.kr 접속 ⇒ 중앙 상단의 My Page 클릭 ⇒ 좌측 중앙의 CMS 담당자정보 클릭 ⇒ 담당자정보 수정
3. www.cmsedi.or.kr 접속 ⇒ 우측 상단의 자료실 클릭 ⇒ 좌측 업무양식 클릭 ⇒ CMS업무담당자 선임(변경)통보서(26번 게시물) 작성 및 FAX 송신 (02-566-6426)

4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금이체정보 조회서비스의 추진 배경(이유)이 무엇인가요?

- 정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저하된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보유출, 전산사고, CMS 부당인출 시도, 펌뱅킹을 이용한 부당인출 사고 등

-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및 한국은행법 제81조에 의한 개선권고에 따라 금융기관이 이용기관으로부터 납부자의 출금 동의내역을 보관·관리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기관은 CMS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지로자동이체나 펌뱅킹 등 모든 출금이체서비스의 안전성과 대고객 신뢰성을 제고를 위하여 「출금이체정보 조회서비스」를 금융기관 공동으로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출금이체정보 조회서비스와 관련한 이용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우선적으로는 출금이체정보를 조회한 고객이 본인의 출금이체등록정보에 대해 다양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용기관의 민원응대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서비스 이용을 해지(보험계약의 해지,신용카드의 해지 등)했는데 출금이체 정보가 여전히 등록되어 있다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은 1건인데 출금이체정보는 복수정보가 조회되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기관에서는 서비스이용이 완료된 고객의 출금이체동의정보는 금융회사에 해지요청하시어 출금이체정보의 해지를 관리해주셔야 하며, 1건의 서비스 이용 대금 출금을 위해 여러 가지 출금이체서비스에 복수등록한 경우(편뱅킹+CMS 또는 지로+CMS 등) 관련한 고객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전 금융회사에 등록된 모든 출금이체등록내역이 조회 가능한가요?

- 출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금융회사에 등록된 “정상” 출금이체신청내역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지내역은 조회불가)
- 다만, 금융회사별로 업무실시시기는 상이합니다.

< 금융회사별 업무실시 일정 >

일 정	참가 금융기관
현 재	경남,광주,기업,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부산,산업,수협,신한,씨티,외환,우리,전북,제주,하나,KB국민,SC 은행
'15.4~5월	우체국,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및 유안타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금융투자회사